

3등급, 4등급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시간이 달라집니다!

■ '17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문요양급여 시간 안내

□ 배경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의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□ 변경 내용

- ▶ 2017년 3월부터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3~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하고,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(1일 최대 9시간)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등급	구분	변경전	변경후
3,4등급	1회 최대 이용시간	4시간	3시간
	1일 이용횟수	1회	3회(2시간 방문간격)
	1일 최대 이용시간	4시간	9시간

※ 1,2등급 수급자는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합니다.

- ▶ 2017년 1월 1일부터 월 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.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(원)	1,252,000	1,103,400	1,043,700	985,200	843,200

□ 방문요양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방법

270분 이상 연속하여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 4일은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